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| | |
|---|-------|
| 선 | 기관위원장 |
| 람 | |

제1204호 2016. 9. 9(금)

차 례

고 시

- 2017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고시 ----- 1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-135호

2017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고시

「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17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9. 9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고 시 명 : 2017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

2. 목 적

-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임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적용기간 : 2017. 1. 1. ~ 2017. 12. 31.

4. 주요내용

- 생활임금액 : 6,790원(시급)
- 생활임금 적용항목 : 기본급
- 생활임금 적용대상
 -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·출연기관 소속 근로자
 - 구 소속 근로자 및 구 출자·출연기관 소속 근로자, 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

※ 적용제외

-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
-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
-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

5. 기 타

-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문의 : 일자리지원과(560-5802)